

#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아량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3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송아량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정지권, 이병도, 한기영, 이광호,  
임종국, 김태호, 박기재, 송정빈,  
이승미, 이은주, 추승우, 정진철,  
성중기 의원(13명)

## 1. 제안 이유

- '20년 2월 교통방송이 재단으로 출범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교통방송운영계정을 더 이상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어 관련사항을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교통방송 재단출범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방송운영계정 관련사항을 삭제함(안 제1조, 안 제4조, 안 제9조)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등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리하며,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”를 “관리하기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 및 교통방송계정”을 삭제한다

제9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통방송운영계정에 관한 경과조치) 제9조에 의한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, 교통방송운영계정이 삭제됨과 동시에 집행잔액 등 계정 잔여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또는 세입처리할 수 있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며,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<u>효율적으로 운영하기</u>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관리하기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계정의 구분) 회계는 교통관리 계정·교통개선분담금계정·주차장 관리계정 <u>및 교통방송계정</u>으로 구분하고,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</p>	<p>제4조(계정의 구분) 회계는 교통관리 계정·교통개선분담금계정·주차장 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,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</p>
<p>제9조(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 및 세출) ① <u>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광고방송 수입</u></li> <li>2. <u>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</li> <li>3. <u>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 부터의 용자금</u></li> <li>4. <u>기채(기채: 공채모집) 및 차입금</u></li> <li>5. <u>교통방송재산의 매각대금 및 사</u></li> </ol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용수익금</u></p> <p><u>6. 방송사업의 수입</u></p> <p><u>7.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</u></p> <p><u>② 교통방송운영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<u>1. 교통방송의 운영</u></p> <p><u>2. 방송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</u></p> <p><u>3. 교통방송 및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·행사의 수행 및 지원</u></p> <p><u>4. 방송제작과 방송제작에 필요한 전속단체 및 통신원 등의 운영·관리 및 육성</u></p> <p><u>5. 기채·차입금 및 융자금의 상환</u></p> <p><u>6. 방송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개발</u></p> <p><u>7. 교통소통 촉진을 위한 사업</u></p> <p><u>8. 그 밖에 교통방송에 필요한 사업</u></p>	